2023-11-22

2023-2학기(3차) 교내장학금 운영 세부계획

- 계속장학 : 학과에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장학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선발하는 장학이다. 대부분 1차(등록대체, 고지서 선감면)으로 지급하며 어떠한 이유로 누락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음 차수에서 학생지급의 형태로 학과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.
- 부서선발 : 본부 혹은 협조 행정부서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명단을 제공하는 장학으로, 학과에서는 <u>명단을 받은 후</u> 혹시 누락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<u>해당학생의 장학금을 학과에서 직접 신청</u>하여야 한다.
- 학과신청 : 학과에서 직접 신청해야하는 장학으로 차수별로 해당되는 장학을 학생들에게 안내 후 대상자를 모집하여야 한다. 어떠한 이유로 <u>누락되어 1차(등록대체, 고지서 선감면)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</u> 또한 이에 해당하며 학과에서 조사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.

번호	장학성격	장학명	기준금액	지급방법	장학코드	선발기준/제출서류	1차	2차	3차	4차 신청방법	비고
1	등록금	다문화장학금	500,000	학생지급	00321	■ 선발기준 : 학생(한국국적)이 다문화 가정의 일원인 자 ※배우자는 제외 ■ 제출서류 : 가족 중 외국인임을 증명가능한 기본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 1부 ※ 제출서류는 기본증명서만 제출가능 주민등록등본, 여권 서류 인정 불가			•	학과신청	
2	아 목 다	생활복지장학1종	수업료100%	학생지급	00249	★유의사항: 생활복지장학1종 등록금감면 대상자 및 수업료 전액 수혜자는 장학금으로 전액 등록금감면 받았으므로 후지급 신청자격 없음 유형①<국가장학 수혜자> 국가장학 소득분위(0~2)장학생 중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전발기준: 국가장학금 소득분위(0~2)이면서 교내장학금 기준에 적합하나 소득분위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입생으로 생활복지장학1종으로 등록금 선감면 받지 못한 학생 제출서류: 없음 유형②<국가장학 미수혜자> ②-1. 국가장학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0~2분위로 확인이되나, 성적 또는 수혜횟수 초과등의 사유로 국가장학을 받지 못한 학생		•	•	부서선발	교학처 선발
						■ 제출서류: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※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방법: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→장학금→증명서발급→학자 금지원구간통지서발급→발급하기 ②-2. 국가장학 미신청자로 소득분위가 확인 되지 않으나, 신청자 본인이 장학금 신청일 기준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사정 곤란자(기초생활 수급자격)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■ 제출서류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생계/의료) - 기초생계급여수급자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*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					
3	등록금	생활복지장학2종(신규)	1,000,000	학생지급	00431	■ 선발기준 : 신청자 본인이 장학금 신청일 기준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사정 곤란자(차상 위계층 수급자격)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■ 제출서류 :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사정이 곤란함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중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/교육) : 기초주거급여수급자, 기초교육급여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증명서 :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: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④ (경증)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: 차상위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대상자 ⑤ 자활근로자 확인서 : 차상위자활대상자 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: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⑦ 차상위 계층 확인서 : 차상위 계층 대상자 ■ 제출서류 발급처 ※ 본인 명의로 된 증명서 제출 ① 기초/차상위 서류 - 주민자치센터, 온라인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장애인 증빙서류(본인 명의 장애인 증명서)-읍면동주민자치센터, 정부24			•	학과신청	
4	등록금	생활복지장학3종(신규)	500,000 (직계가족 동시재학)	학생지급	00432	■ 선발기준 : 본인 및 직계가족(배우자, 형제자매 포함) 동시에 재학하는 경우한 명에게만 지급됨 * 다만, 동시에 재학하는 인원이 3인 이상인 경우 지급 기준은 장학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■ 유의사항 :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직계가족 중 한명만 교내장학금 신청 ※ 1학기 재학 하는 경우만 해당 (지급일자 기준 직계가족 중 한명이 휴학상태인 경우 탈락) ■ 제출서류 : 직계가족 학생의 국제대학교 재학증명서, 직계가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			•	학과신청	
5	등록금	생활복지장학8종(학생지급)	400,000 (본인 또는 직계가족 장애 중증/경증)	학생지급	00552	■ 선발기준 : 본인 및 직계가족(본인, 배우자, 형제자매 포함)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 종합장애 정도로 확인 - (중증) 정도가 심한 장애로 표시 - (경증)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표시 ■ 제출서류 : 장애인증명서, 직계가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※ 장애인등록증 인정 불가			•	학과신청	
		봉사장학금 3종(생활비)	500,000 (학과 학회장)	학생지급	00453	■ 선발기준 : 학과선발 ※ 특히 학회장변동한 경우→교학2팀(학생) 변동 요청 후 승인 ■ 세부기준 ①대학신문방송국(학보사, 방송국) - 학보사(2명) : 편집부장, 기획부장			•	학과신청	
6	생활비	봉사장학금 8종(생활비)	300,000 (학과 학년대표)	학생지급	00454	- 방송국(2명): 실무국장, 총무국장 ② 폐과예정 학회장은 2학년 대표를 겸직하고 장학금 신청 시에는 봉사장학금 2종(학회장)으로 신청 ※ 봉사장학금 중복 시 상위 장학금 지급			•	학과신청	
		봉사장학금 8종 (대학신문방송국 생활비)	200,000 (학보사, 방송국)	학생지급	00553	<예시①> 학회장이면서 학보사 기획부장을 하는 경우 → 상위 장학인 봉사장학금 2종 지급, "봉사장학금 8종;학보사 부장" 지급불가 <예시②> 학회장 이면서 방송국 실무국장인 경우 → 봉사장학금 8종 한번만 지급(2개 이상의 직책을 맡고 있어도 한번만 지급)			•	학과신청	

2023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(3차) 신청 참조사항

※ 신청기간 : ~2023.11.30.(목)까지 학사행정시스템 입력 및 공문제출

※ 지급예정일 : 12월 <mark>말</mark>

** 해당 학기 등록금(수업료) 범위를 초과 지원 불가 (국가장학 수혜 등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시 타장학 수혜 불가)

연번	장학명	선발기준	증빙서류 <개강일(2023.08.28.)이후 발급 서류만 유효>	장학 형식	장학금액	비고	
1	다문화장학금	■ 학생이 다문화 가정의 일원인 자(단, 학생은 한국국적이어야 함) ■ 가족 중 배우자는 제외	 가족 중 외국인임을 증명가능한 기본증명서(상세) (주민등록등본, 여권 등은 인정 불가) 가족관계증명서	등록금	500,000원	학과신청	
2	생활복지장학1종(학생지급)	■ <국가장학 수혜자> 국가장학 소득분위(0~2)장학생 중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■ <국가장학 미수혜자> 유형① 국가장학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0~2분위로 확인되나, 성적 또는 수혜횟수 초과 등의 사유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경우 유형② 국가장학 미신청자로 수득분위가 확인되지 않으나, 신청자 본인이 장학금 신청일 기준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적 사정 곤란자(기초생활 수급자격)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	 유형① :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	등록금	수업료100%	명단 별도 통보 (학과에서도 누락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)	
3	생활복지장학2종(신규)	 ■ 신청자 본인이 장학금 신청일 기준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사정 곤란자(차상위계층 수급자격)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■ <예시> ① 기초 주거/교육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③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④ 차상위 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 대상자 ⑤ 차상위 자활 대상자 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⑦ 차상위 계층 대상자 	 ● 아래 본인이 해당하는 증명서 중 택1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/교육)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④ (경증)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⑤ 자활근로자확인서 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■ 제출서류 발급처(반드시 본인 명의의 증명서 제출) ① 기초/차상위서류: 주민자치센터, 온라인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장애인증빙서류: 주민자치센터, 온라인 정부24 	등록금	1,000,000원	학과신청	
4	생활복지장학3종(신규)	■ 본인 및 직계가족(배우자, 형제자매 포함) 2명이 본교에 동시 재학하는 경우 ■ 장학금은 2명 중 1명에게만 지급되므로 직계가족 중 1명만 장학금을 신청 ■ 단, 동시 재학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지급 기준은 장학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	■ 직계가족 학생의 재학증명서 ■ 직계가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	등록금	500,000원	학과신청	
5	생활복지장학8종(학생지급)	■ 본인 및 직계가족(배우자, 형제자매 포함)이 장애가 있는 경우	■ 장애인증명서(장애인등록증 불가) ■ 직계가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	등록금	400,000원	학과신청	
6	봉사장학금3종(생활비)	■ 학과 학회장(3종), 학년대표(8종), 대학신문방송국(8종) ■ <세부기준> ① 대학신문방송국(학보사, 방송국) - 학보사(2명): 편집부장, 기획부장	■ 교학2팀에 제출한 공문	생활비	500,000원 (학과 학회장)		
7	봉사장학금8종(생활비)	- 방송국(2명) : 실무국장, 총무국장 ② 폐과예정 학회장은 2학년 대표를 겸직하고 장학금 신청 시 3종으로 신청 ■ 봉사장학금 중복 시 상위 장학금 1개만 지급			300,000원 (학과 학년대표)	학과신청	
8	봉사장학금8종(대학신문방송국 생활비)	 <예시①> 학회장이면서 학보사 기획부장을 하는 경우 →상위 장학인 3종 지급, 8종(대학신문방송국) 장학은 지급 불가 <예시②> 학년대표이면서 학보사 기획부장을 하는 경우 →상위 장학인 8종(300,000원) 한 번만 지급 			200,000원 (대학신문방송국)		